

보도 일시	2022. 6. 19.(일) 12:00 2022. 6. 20.(월) 조간	배포 일시	2022. 6. 19.(일) 12:00
담당 부서 <총괄>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이민재 (044-202-7553)
		담당자	사무관 최충운 (044-202-7528)

지역 노사민정과 함께하는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6.20.~6.24.) 운영

- 지역 노사단체 · 유관기관 등과 적극적인 공동 캠페인 -
- 소규모 기업 밀집 지역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 지도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6.20.부터 1주간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 ① 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 임금명세서 교부 ③ 최저임금 준수 ④ 임금체불 예방

-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일하는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무관리가 특히 취약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해 매 분기 마지막 달 넷째 주,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동시에 집중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 실시 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 첫째, 이번 실시하는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노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지역 노사단체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 중심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공동 캠페인이나 협약식을 통해 노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 외식업중앙회 등 소규모 사업주가 많은 협회·단체와의 공동 홍보를 통해 영세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둘째, 거리두기 해제 등 상황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아 지도와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 밀집지역 중심으로 거리 캠페인, 현장 상담 부스 설치, 안내 전단 배포 등을 통해 현장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는 한편,
 - 소규모 업체가 많은 음식점, 편의점, 커피숍, 소규모 제조업 등 중심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 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통해 노동자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셋째, 현장 지도·점검과 함께, 유관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활용한 공동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한편, ‘22년 3월 말에 실시한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장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중기중앙회, 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한 공동 캠페인과 노무 지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했고,
 - 2,600개가 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현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는 데 의미 있는 활동을 전개했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4대 기초노동질서는 노동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사항”이라면서,
 - 특히, “지역단위에서 노사민정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적극 협력하여 기초 노동질서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담당 부서 <총괄>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이민재 (044-202-7553)
		담당자	사무관	최총운 (044-202-7528)
<서울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책임자	과 장	조남식 (02-2250-5750)
		담당자	팀 장	임승묵 (02-2250-5806)
<중부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책임자	과 장	정언숙 (032-460-4580)
		담당자	팀 장	김시영 (032-460-4562)
<부산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책임자	과 장	추광호 (051-850-6459)
		담당자	팀 장	손용득 (051-850-6441)
<대구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동환 (053-667-6261)
		담당자	팀 장	박종철 (053-667-6278)
<광주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책임자	과 장	임동학 (062-975-6320)
		담당자	팀 장	김희영 (062-975-6317)
<대전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경민 (042-480-6240)
		담당자	팀 장	김동환 (042-480-6275)



구분	주요 활동사항
서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캠페인) 소상공인 밀집지역 서울지역 노사민정 합동 거리 캠페인(종로, 강남역, 홍대입구역, 신도림역 등),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간담회 등 ■ (현장 지도) 종로 주얼리거리, 서울벤처벨리 등 노무관리 현장 컨설팅(상담부스 설치 등), 음식점 신규창업자 대상 홍보 스티커 배부
충부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캠페인) 인천노사민정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총 등 공동캠페인, 안산·시흥 노사민정협의회가 함께하는 거리캠페인 등 ■ (현장 지도) 안양 소상공인 밀집지역 거리 캠페인, 현장상담부스 설치 등 ■ (기타) 수원 「kt wiz」와 함께하는 유관기관 공동 4대 기초노동질서 야구장 캠페인
부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캠페인) 부산노사민정협의회와 함께하는 공동캠페인, 양산 지역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협약식 개최 및 가두 캠페인, 진주 지역 외식업중앙회 공동 캠페인 등 ■ (현장 지도) 부산게임협회 회원사 대상 현장 설명회, 창원시내 현장 상담부스 설치, 울산지역 경총회원사 대상 팸플릿 배포, 진주 소상공인 밀집지역 리플렛 배포 및 거리 캠페인 등
대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캠페인) 대구노사민정협의회와 함께하는 공동 캠페인, 포항지역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공동캠페인<라운누리*> 등 * '즐거운 세상'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통해 '즐거운 노동문화'를 정착하자는 취지 ■ (현장 지도) 포항지역 소상공인 밀집지역 현장 상담부스 설치, 영주역 등 가두캠페인 등
광주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캠페인) 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와 공동 거리캠페인 (광주 음식점 밀집지역 등), 전남경총과 함께하는 공동캠페인, 익산노사민정협의회와 함께하는 공동캠페인, ■ (현장 지도) 한국프랜차이즈 전북지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군산 시지부, 소상공인 군산센터 등 방문 홍보
대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캠페인)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지회·충남지회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협약식 및 공동 홍보(캠페인), 청주노사민정협의회 공동캠페인, 천안지역 상인회, 중기중앙회 천안지부 등 간담회 ■ (현장 지도) 청주산단 등 산업단지 순회 설명회, 대전지역 소상공인 밀집지역 중심 거리 캠페인, 외식업중앙회 회원 현장 교육 등

지역 **노·사·민·정**과 함께하는
2차 현장 예방 점검의 날
2022.6.20.~6.24.

영세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매 분기 마지막달에 기초적인 노동법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고, 근로감독관이 지도·점검을 하게 됩니다.**



4대 기초노동질서 함께 지켜나가요

①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표준근로계약서' 검색

②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메인 배너 →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배포

③ 최저임금 준수

'22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9,16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우측 하단)

④ 임금체불 예방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붙임3

4대 기초노동질서 홍보자료

□ 브로셔

4대 기초노동질서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로 문의

구분	연락처
노동위원회	서울노동위원회 02-2354-9700
	서울지방법원 02-2354-7902
	서울고법 02-2354-9700
	서울지방법원 02-2354-9700
	서울지방법원 02-2354-9700
	서울지방법원 02-2354-9700
	서울지방법원 02-2354-9700
	서울지방법원 02-2354-9700
	서울지방법원 02-2354-9700
	서울지방법원 02-2354-9700
노동부	노동위원회 02-2354-9700
	노동위원회 02-2354-9700
	노동위원회 02-2354-9700
	노동위원회 02-2354-9700
	노동위원회 02-2354-9700
	노동위원회 02-2354-9700
	노동위원회 02-2354-9700
	노동위원회 02-2354-9700
	노동위원회 02-2354-9700
	노동위원회 02-2354-9700

근로계약서 서식 표준근로계약서 (간단히 활용이 가능해요)

언제 '아파트'에 할까요? 언제 '식당'에 할까요?
 단골이 되어 주세요!
 1. 근로계약서: 년 월 일부터
 2. 근로계약서:
 3. 근로계약서:
 4. 근로계약서:
 5. 근로계약서:
 6. 근로계약서:
 7. 근로계약서:
 8. 근로계약서:
 9. 근로계약서:
 10. 근로계약서:
 11. 근로계약서:
 12. 근로계약서:
 13. 근로계약서:
 14. 근로계약서:
 15. 근로계약서:
 16. 근로계약서:
 17. 근로계약서:
 18. 근로계약서:
 19. 근로계약서:
 20. 근로계약서:
 21. 근로계약서:
 22. 근로계약서:
 23. 근로계약서:
 24. 근로계약서:
 25. 근로계약서:
 26. 근로계약서:
 27. 근로계약서:
 28. 근로계약서:
 29. 근로계약서:
 30. 근로계약서:
 31. 근로계약서:
 32. 근로계약서:
 33. 근로계약서:
 34. 근로계약서:
 35. 근로계약서:
 36. 근로계약서:
 37. 근로계약서:
 38. 근로계약서:
 39. 근로계약서:
 40. 근로계약서:
 41. 근로계약서:
 42. 근로계약서:
 43. 근로계약서:
 44. 근로계약서:
 45. 근로계약서:
 46. 근로계약서:
 47. 근로계약서:
 48. 근로계약서:
 49. 근로계약서:
 50. 근로계약서:
 51. 근로계약서:
 52. 근로계약서:
 53. 근로계약서:
 54. 근로계약서:
 55. 근로계약서:
 56. 근로계약서:
 57. 근로계약서:
 58. 근로계약서:
 59. 근로계약서:
 60. 근로계약서:
 61. 근로계약서:
 62. 근로계약서:
 63. 근로계약서:
 64. 근로계약서:
 65. 근로계약서:
 66. 근로계약서:
 67. 근로계약서:
 68. 근로계약서:
 69. 근로계약서:
 70. 근로계약서:
 71. 근로계약서:
 72. 근로계약서:
 73. 근로계약서:
 74. 근로계약서:
 75. 근로계약서:
 76. 근로계약서:
 77. 근로계약서:
 78. 근로계약서:
 79. 근로계약서:
 80. 근로계약서:
 81. 근로계약서:
 82. 근로계약서:
 83. 근로계약서:
 84. 근로계약서:
 85. 근로계약서:
 86. 근로계약서:
 87. 근로계약서:
 88. 근로계약서:
 89. 근로계약서:
 90. 근로계약서:
 91. 근로계약서:
 92. 근로계약서:
 93. 근로계약서:
 94. 근로계약서:
 95. 근로계약서:
 96. 근로계약서:
 97. 근로계약서:
 98. 근로계약서:
 99. 근로계약서:
 100.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서식

구분	내역	금액(원)
임금	기본급	3,000,000
	연봉	36,000,000
	초과근로	1,000,000
	휴일	100,000
	연차	1,000,000
	퇴직	1,000,000
	기타	1,000,000
	합계	33,000,000
	공제	1,000,000
	실수령액	32,000,000

노동자와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4대 기초노동질서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2. 임금명세서 교부
3. 최저임금 준수
4. 임금체불 예방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1. 임금과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근로시간(정규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3. 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위험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등
6. (간접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간접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형태 근로조건

※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표준근로계약서 검색 >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로드
 ※ 500만원 이하 임금 부가(간접 및 간접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지급의 경우 과태료 부과)

2. 임금명세서 서식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아래 사항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서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메신저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1. 이름,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총액
4.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있을 때는) 연장시간수 보충할 계산방법
5.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 임금항목별 금액
6. (임금항목별 금액이 총임금수 등에 따라 달라질 때는) 경우 발생 항목별 계산방법
7. (임금공제사)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임금명세서 서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임금명세서 다운로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최저임금 준수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2022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 9160원
 연봉: 73,280원(월 8시간 기준)
 주: 1,914.44원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사용자는 반드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문의 개간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자료 > 최저임금 문의개간기(우측 하단)
 ※ 3년 이하 장여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4. 임금체불 예방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권리를 지급해야 합니다.

※ 3년 이하 장여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참고: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한 후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월평균임금×30일×재직기간×퇴직률이며, 퇴직률은 퇴직일 직전 3개월 평균을 지급할 임금지급액 그 기간의 총임금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자료 > 퇴직금개간기 > 나의 퇴직금 계산

임금불 못 받았다면?
 가까운 지방노동청에서 신고해 주세요.
 ※ 신고할 수제 가장 최근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신고하기

□ 카드뉴스

4대 기초노동질서 현장 예방점검의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나가면 꼭 확인한다는 그 것!

1. 근로계약서편

혼자 일하던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생겨난 '지금이야' 사장님

직원 월급 줄때 임금명세서와 함께 줘야 한다던데 그게 뭐죠?

임금명세서

구분	내역	금액(원)
임금	기본급	2,090,000
	연봉	24,840,000
	초과근로	100,000
	휴일	100,000
	연차	1,000,000
	퇴직	1,000,000
	기타	1,000,000
	합계	23,340,000
	공제	1,000,000
	실수령액	22,340,000

계산 방법

4대 기초노동질서 현장 예방점검의날

사장님도~ 노동자도~

작성하자~! 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받기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www.moel.go.kr

4대 기초노동질서 현장 예방점검의날

임금명세서 is 필수

이런 달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얼마나 일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 임금총액
-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총임금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상세내역

안 지키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